

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5일

합병하려는 법인	갑	법인의 명칭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
		소재지		전화번호
	을	법인의 명칭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
		소재지		전화번호

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	법인의 명칭			
	소재지			
	대표자 성명			
운영형태(광역형 또는 도시형)				
노선 또는 사업구역				
합병의 방법 및 조건			합병하려는 날짜	
합병 사유				

「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피합병법인 대표자(갑) (서명 또는 인)

피합병법인 대표자(을) (서명 또는 인)

합병 후 존속(설립) 법인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
특별자치시장·
특별자치도지사·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공통	1. 합병계약서 사본 2.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.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. 노선도	수수료 없음
	기존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	1.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.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	
	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	1. 정관(「공증인법」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) 2.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.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	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